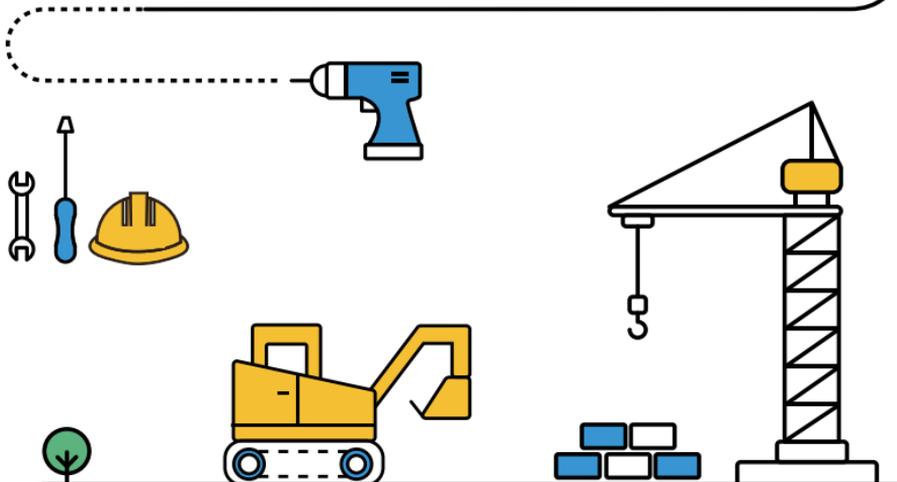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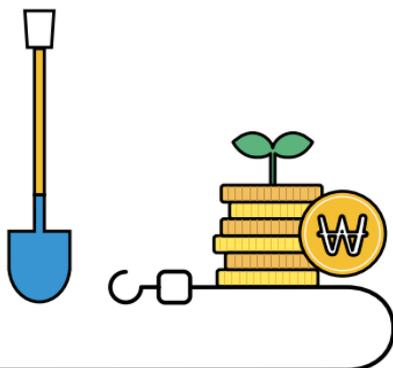




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 
**클린사업**이  
지원합니다.



##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

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또는  
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조성하여  
**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정부지원(국고보조)사업**입니다.

구분	지원대상	지원조건	지원금액 및 지원비율
사망사고 고위험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(건설업제외)</li> <li>▶ 이동식크레인·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사업장</li> </ul>	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, 공단의 기술 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지원금액</b>: 사업장 당 2,000만원 까지</li> <li>▶ <b>지원비율</b>: 공단 판단금액의 70% 또는 정액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이동식크레인·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</li> <li>*정액지원: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</li> </ul> </li> </ul>
클린 사업장 인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19년~'20년 고용노동부·공단·민간위탁기관의 감독·점검 및 기술 지원 사업장(노동부·공단이 직접 선정하고 기술지원한 사업장에 한함)</li> <li>•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(인정유효기간 내)</li> </ul> </li> </ul>	투자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"클린사업장 인정기준"을 충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지원금액</b>: 사업장 당 2,000만원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,000만원 추가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용증가 사업장(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)</li> <li>•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</li> <li>•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</li> <li>• 고위험업종(산재보험료를 상위업종 등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▶ <b>지원비율</b>: 공단 판단금액의 50% 또는 정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10인 미만 및 고위험업종은 70%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
추락방지 안전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원도급업체</li> <li>• 「철근·콘크리트공사업」과 「비계·구조물해체공사업」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(하도급) 포함</li> </ul> </li> </ul>	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설치·해체하고자 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지원금액</b>: 건설현장 당 2,000만원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 까지</li> </ul> </li> <li>▶ <b>지원비율</b>: 공단 판단금액의 50% 또는 정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공사금액 3억원 미만(65%), 3~20억원 미만(60%), 20~50억원 미만 50% 지원</li> <li>※ 시스템비계 조건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
산업단지 산재예방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, 사업주단체, 산업 단지 관리주체</li> </ul>	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산재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지원금액</b>: 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</li> <li>▶ <b>지원비율</b>: 공단 판단금액의 50%</li> </ul>

※ 2020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사업장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**최우선 지원 대상**임 (지원대상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이면 지원 가능)

1

##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

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,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-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.

### 지원 대상

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주로서,
  - 이동식크레인,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(방호장치 설치 시)
  -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(건설업 제외)
    - 당해년도 용자금 지급 사업장은 당해년도 지원 불가

### 지원 금액

- 사업장 당 최대 2,000만원 [소요금액의 70% 또는 정액(일부품목 한정)]
  - 「클린사업장 인정」사업과 중복 신청할 경우 사업장당 총 보조한도액은 2,000만원

### 지원 설비

- 이동식크레인,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
- 고용노동부 감독 및 공단 기술지원 등에 따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 시설 및 장비
-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
  - 지게차, 건설기계(백호, 로우더)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(전·후방 카메라, 감지 센서, 경보장치 등)
  - 소형타워크레인(3톤 미만) 안전장치, 추락사고사망 예방 에어매트
  - 천장크레인(3톤 미만)이고 안전검사 수검 불가능하여 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)
  - 산업용로봇 방호장치(방호울, 안전매트, 라이트커튼, 레이저스캐너, 인터록스위치, 가동허가장치)
    - 국내·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에 한하며, 산업용로봇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제한 조치가 필요한 설비(자동화시스템 등)에도 적용가능
  -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설비(호흡용 보호구, 가스측정장비, 환기설비, 구출설비 등)
  - 화재·폭발 예방을 위한 방폭형 전기·기계기구장비 및 설비, 압력방출장치 등
  -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설비(밀폐설비, 국소배기장치 및 소음방지시설 등)
  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-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
  - 기타 사망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품목(프레스 자동화설비 등 15종)

### 지원 절차



- 사업주
- 공단

- 안전검사 대상품의 경우 안전검사 실시(합격) 후 투자완료 확인요청
-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(미제출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)

### 신청 방법

공단 지역별 일선기관(광역·지역본부/지사)에 **제출 서류**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 우편 및 직접방문제출 또는 온라인신청 지원 신청서류 일체

온라인신청 및 서식다운 
클린홈페이지 (clean.kosha.or.kr) 
알림마당 (참여자업장) 
서식모음 및 자료실

문의 : 1544-3088 / 지역별 일선기관 연락처 참고

### 시행 기간

연 중 수시(재원 소진 시까지)

## 클린사업장 인정(제조·서비스업)

기술·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,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.

### 지원 대상

- 근로자를 고용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제조·서비스업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[과거 보조금 지원사업장으로 기 지원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된 사업장(재인정) 포함]
  - 1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(인정유효기간 내)
  - 2 '19년~'20년 고용노동부의 감독·점검 또는 공단·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원 사업장
    - 고용노동부·공단에서 직접 기술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감독·점검·기술지원 실시 사업장에 한함

**위 조건을 충족하고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기업,  
일본수출규제영향사업장(AA등급)일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**  
(단,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업장은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조건만 충족되면 최우선 지원)

- 당해년도 용자금 지급 사업장은 당해년도 지원 불가

### 지원 금액 및 조건

- 사업장 당 최대 2,000만원 [소요금액의 50% 또는 정액(일부품목 한정)]
  - 10인 미만 사업장 및 고위험업종 사업장은 70%까지 지원
  - 과거 보조금 지원사업장(재인정)은 보조지원 한도금액에서 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
  - 과거 보조지원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은 지원한도액을 초기화하여 재지원 가능
- 지원한도액 추가지원(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,000만원 추가)
  - 고용주가 사업장(클린사업 재인정 참여 시에만 증액가능, 인원 1명당 200만원)
  - 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
  -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
  -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재해율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업종 사업장
  - 고위험업종(7개 업종) : 펄프제조업(20408), 건설용점토제품제조업(21406),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(21801),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(21805), 합금철제조업(21817), 철강재제조업(21818), 철강압연업(221821)
- 지원조건 : 투자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건

### 지원 절차

■ 사업주  
■ 공단



- 대상사업장 선정은 일선기관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
-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(미제출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)
- 투자완료확인 다음연도부터 최대 3년 동안 연1회 이상 현지방문을 통한 사후기술지도 실시 (보조금으로 구입·취득한 산업재해예방설비의 목적 외 사용여부, 효율적인 사용지도 등)

신청  
방법

온라인 신청(우편 및 직접제출 가능)  
제출서류 :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류 일체

온라인신청  
및 서식다운

클린홈페이지  
([clean.kosha.or.kr](http://clean.kosha.or.kr))

알림마당  
(참여자업장)

서식모음 및  
자료실

문의 : 1544-3088 / 지역별 일선기관 연락처 참고

시행  
기간

연 중 수시(재원소진 시까지)

클린사업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



공통적용 항목  
65 점

- 1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
- 2 사고사망 재해다발 위험 업종(소업종 적용)
- 3 지역별 재해다발 위험 업종(소업종 적용)
- 4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
- 5 장년근로자(만 55세 이상), 장애인, 외국인, 청년(15~29세 이하) 등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사업장 (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의 관련 증빙자료 제출)
- 6 크레인(정격하중 2톤 이상), 지게차(좌·입식) 보유사업장 (해당설비 사진 제출)

자율활동  
우수항목  
15 점

- 7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(노사문화우수기업, 강소기업, 일학습병행제로 인정 받은 사업장 등)
- 8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한 협력업체('19~'20년 참여)

일선기관별  
지역특성을 반영한  
자율항목  
20 점

위험업종 및 일선기관별 자율항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조

- [www.kosha.or.kr](http://www.kosha.or.kr) > 공단소개 > 광역본부/지역본부/지사
- > 관할지역 선택 > 알림마당(참여자업장)

※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기업, 일본수출규제영향사업장(AA등급)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(단,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업장은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조건만 충족되면 최우선 지원)

### III

##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지원

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
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(국고보조)사업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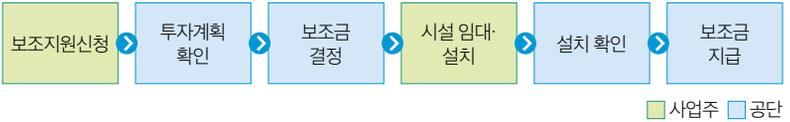
### 지원 대상

-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
-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
  - 「철근-콘크리트 공사업과」비계-구조물 해체공사업」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(하도급인 경우) 포함
  - 추락방지 안전시설 : 시스템 비계, 안전방망(낙하물방지망, 추락방호망, 수직보호망)

### 지원 금액

- 건설현장 당 최대 2,000만원
  -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까지 지원 가능
  - 전문건설업체(하도급)는 설치·해체 비용 등의 노무비를 제외한 임대비 또는 재료비만 보조 지원 가능
- 시스템비계 :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(공단이 정한 조건표에 따름)
  - 조건표 : 클린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 > 공지사항 > "2020년 건설업 클린사업 주요변경사항 알람" 참고
- 안전방망 : 공사금액별 공단 판단금액의 65%~50%까지 지원
  - 공사금액 3억 미만 65%, 3~20억 미만 60%, 20~50억 미만 50% 지원

### 지원 절차



### 신청 방법

공단 지역별 일선기관(광역·지역본부/지사)에 우편 및 직접방문제출 또는 온라인신청  
제출서류 :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류 일체

온라인신청 및 서식다운	클린홈페이지 (clean.kosha.or.kr)	알림마당 (참여사업장)	서식모음 및 자료실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

문의 : 1544-3088 / 지역별 일선기관 연락처 참고

### 시행 기간

연 중 수시(재원 소진 시까지)

### IV

##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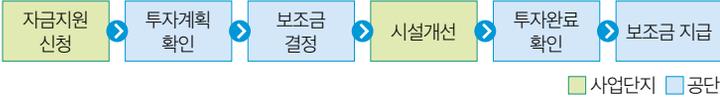
### 지원 대상

『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』에 따른 산업단지로서,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산업단지 관리주체,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, 사업주단체

### 지원 금액

- 산업단지 당 10억원까지 지원 가능(공단 판단금액의 50% 지원)
  - 기 지원받은 산업단지는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추가지원하며, 건물 건축비, 관리비 및 운영비 등은 지원 제외

지원 절차



지원 대상설비

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근로자가 공동 이용하는 안전보건 자료실, 상담실, 안전보건 교육시설, 체력증진시설, 목욕·샤워·세탁시설 등

신청 방법

공단 지역별 일선기관(광역·지역본부/지사)에 우편 및 직접방문제출  
 제출서류 :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류 일체

각종서식 다운방법	클린홈페이지 ( <a href="http://clean.kosha.or.kr">clean.kosha.or.kr</a> )	알림마당 (참여사업장)	서식모음 및 자료실
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문의 : 1544-3088 / 지역별 일선기관 연락처 참고

시행 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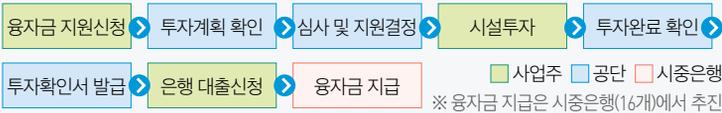
연 중 수시(재원 소진 시까지)

산재예방시설 용자지원

지원 대상 및 조건

- 산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
- 산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(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에 한함)
- **용자금액** : 사업장당 10억원 한도(연리 1.5%,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)
  - 용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  - 당해년도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당해년도 용자지원 불가

지원 절차



지원 대상설비

- 산입재해 예방 또는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·장비
-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 표준에 따라 필요한 기계·기구 및 설비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·위험 기계·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
- 안전인증 대상 유해·위험 기계·기구 및 설비(신규 설치 또는 교체)
-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

신청 방법

공단 지역별 일선기관(광역·지역본부/지사)에 우편 및 직접방문제출 또는 온라인신청  
 제출서류 :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류 일체

온라인신청 및 서식다운	클린홈페이지 ( <a href="http://clean.kosha.or.kr">clean.kosha.or.kr</a> )	알림마당 (참여사업장)	서식모음 및 자료실
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문의 : 1544-3088 / 지역별 일선기관 연락처 참고

시행 기간

연 중 수시(재원 소진 시까지)

## 주요 지원 설비

클린사업 지원설비는 기술지원 및 투자계획수립 컨설팅 시 제기된 **유해·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재해예방설비를 지원**합니다.

###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주요 지원 설비(클린사업장 인정으로도 지원가능)



이동식크레인 및  
고소작업대 방호장치



사출성형기  
자동취출로봇



고소작업대



지게차·건설기계  
충돌예방 전·후방카메라



지게차·건설기계  
충돌재해예방 설비



잠금·표지 장치  
(Lock-Out, Tag-Out)



산업용 로봇 방호장치



안전난간



금형교환장치  
(프레스 및 사출성형기)



프레스 방호장치 및  
자동화 설비



안전검사 불가 천장크레인  
(3톤 미만) 교체



로울러기 급정지장치, 역회전  
장치 및 울 안내로울러



보일러 압력방출장치,  
압력스위치



크레인 무선원격  
제어기



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 
예방장비 및 설비



국소배기장치  
(특별관리물질 등 해당시)

## 클린사업장 인정 주요 지원 설비



컨베이어



전기설비 접지



이동식 코드릴  
(누전차단기 부착형)



이동식 대차



국소배기장치(고위험  
개선으로도 지원 가능)



전체환기시설



에어발란스



동력전달부  
방호덮개



고압가스용기  
전용운반구



사출성형기  
호퍼로더



세척·세안시설



국소냉방설비

## 지원중단 예정설비(42종, 2020년 6월까지 지원)



바닥도장·  
안전통로



작업발판



작업대



적재대



공구대



직류아크용접기



유해광선 차단판



탁상용 드릴기



자동승강대차



내충격성 바닥재



높낮이 또는  
각도 조절 작업대



산업용바닥청소기  
(탑승식 제외)

## 개선사례

### 프레스 방호장치 (양수조작식·광전자식 방호장치)

프레스의 종류 및 작업  
방법에 적합한 방호장치  
(광전자식, 양수 조작식  
등) 설치



### 안전난간 및 사다리(등반이물 포함) 설치

추락위험 장소에 안전  
난간 및 사다리 설치로  
추락 재해 예방



### 국소배기장치 설치

국소배기장치 설치로  
유해물질로 인한  
건강장해 예방



### 중량물 운반용 보조기구 (에어발란스)

중량물 운반작업을 보조  
하여 작업자의 신체부담  
을 줄일 수 있는 중량물  
운반 보조기구 설치



### 작업장 바닥 도장 및 안전통로 설치

작업장 바닥 에폭시 도장  
및 안전통로 확보로 전도  
재해 예방 및 안전하고  
쾌적한 작업환경



## 지역별 안내 및 접수처

자세한 내용은 공단 대표번호(☎1588-3088) 및 지역별 일선기관으로 문의하시거나  
클린사업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온라인 신청 방법 : 클린사업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 > 참여 신청서 작성하기(게시된 온라인 매뉴얼 참고)

연번	일선기관명	관할지역	연락처
1	서울광역본부	서울특별시(강남구, 성동구, 광진구, 송파구, 강동구, 영등포구, 강서구, 양천구,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, 서초구)	02-6711-2897
2	서울북부지사	서울특별시(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노원구, 강북구, 도봉구, 성북구, 용산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은평구)	02-3783-8326
3	강원지역본부	강원도(춘천시, 화천군, 홍천군, 양구군, 인제군, 원주시, 횡성군), 경기도(가평군)	033-815-1022
4	강원동부지사	강원도(강릉시, 동해시, 속초시, 고성군, 양양군, 태백시, 삼척시, 영월군, 정선군, 평창군)	033-820-2512
5	부산광역본부	부산광역시	051-520-0515
6	울산지역본부	울산광역시	052-226-0531
7	경남지역본부	경상남도(창원시, 함안군, 의령군, 창녕군, 진주시, 사천시, 산청군, 거창군, 함양군, 합천군, 하동군, 남해군, 통영시, 고성군, 거제시)	055-269-0557
8	경남동부지사	경상남도(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)	055-371-7562
9	광주광역본부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(나주시, 화순군, 담양군, 곡성군, 구례군, 장성군, 영광군, 함평군)	062-949-8742
10	전북지역본부	전라북도(전주시, 정읍시, 남원시, 완주군, 임실군, 순창군, 무주군, 진안군, 장수군)	063-240-8531
11	전북서부지사	전라북도(익산시, 김제시, 군산시, 부안군, 고창군)	063-460-3619
12	전남지역본부	전라남도(목포시, 신안군, 영암군, 무안군, 강진군, 완도군, 해남군, 진도군, 장흥군)	061-288-8734
13	전남동부지사	전라남도(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, 고흥군, 보성군)	061-689-4952
14	제주지역본부	제주특별자치도	064-797-7514
15	인천광역본부	인천광역시	032-510-0542
16	경기지역본부	경기도(수원시, 화성시, 용인시, 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)	031-259-7173
17	경기북부지사	경기도(의정부시, 동두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고양시, 파주시, 양주시, 포천시, 연천군), 강원도(철원군)	031-828-1962
18	경기서부지사	경기도(안양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광명시, 안산시, 시흥시)	031-481-7533
19	경기동부지사	경기도(성남시, 이천시, 여주군, 광주시, 하남시, 양평군)	031-785-3325
20	경기중부지사	경기도(부천시, 김포시)	032-680-6513
21	대구광역본부	대구광역시(북구, 중구, 동구, 수성구) 경상북도(영천시, 경산시, 청도군, 군위군)	053-609-0553
22	대구서부지사	대구광역시(남구, 달서구, 서구, 달성군, 성주군, 칠곡군, 고령군)	053-650-6854
23	경북지역본부	경상북도(구미시, 김천시,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, 영주시, 봉화군, 상주시, 문경시, 안동시, 의성군, 예천군, 영양군, 청송군)	054-478-8015
24	경북동부지사	경상북도(포항시, 경주시, 영덕군, 울릉군, 울진군)	054-271-2061
25	대전세종광역본부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(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, 금산군)	042-620-5652
26	충북지역본부	충청북도	043-230-7124
27	충남지역본부	충청남도(천안시, 아산시, 보령시, 서산시, 예산군, 당진군, 홍성군, 서천군, 부여군, 청양군, 태안군)	041-570-3435

#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지킴이! 근로자 건강센터 안내

## 근로자 건강센터란?

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근로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(분소)를 설치하고,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전문 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## 주요 서비스

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근로자 건강상담

- 안전보건교육
-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
-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
-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
- 직업환경(직업관리) 상담
-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

## 운영시간

월~금(오전9시~저녁9시)

※ 센터별로 탄력적 운영가능

문의 1577-6497 | 이용요금

전화 1588-6497 | 무료

## 전국 센터(21개소) 분소(21개소) 현황

### 이용방법

- 1 근로자건강센터 방문
- 2 등록카드 작성
- 3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
- 4 전문 건강상담 프로그램/ 질환자 의료기관 연계



※ '20년 2개소 추가 개소 예정

# 2020년 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!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!

## 끼임



- 작업시 끼임 방호조치 및 동력차단장치 설치·확인
- 수리·정비작업시 운전 정지 및 잠금·표지설치 (Lock-Out, Tag-Out)

**주요 위험 기계**  
컨베이어, 프레스, 산업용로봇, 혼합기 등

## 추락



- 적정 작업발판·안전간판·개구부 덮개 설치
- 안전모·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
- 비계 설치·해체 시 안전대착용

**주요 위험 작업**  
비계, 사다리, 개구부, 계단, 고소작업대 등

## 충돌



- 전후방 시야확보
- 보행자 전용통로 확보
- 작업지휘자 배치
- 신호 및 작업유도

**주요 위험 기계**  
지게차, 화물운반트럭, 덤프트럭, 굴삭기 등

## 질식·중독



- 질식위험공간 출입 전 적정 공기농도 확인 및 유지
- 작업 전·작업 중 충분한 환기
- 구조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

**주요 위험 작업**  
맨홀 내 작업, 콘크리트 양생 작업, 방수·도장작업 등

### 반드시 이행!



안전보건공단에서는 부정부패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부패행위는 오른쪽 전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052-703-0751

052-703-0759

